



### Highlight in this issue:

#### 1. 조세관리

- 2022년 부가가치세 ("VAT"), 법인소득세 ("CIT"), 개인소득세 ("PIT") 납부기한 연장 제안
-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SCT) 납부기한 연장 제안

#### 2. 법인세

- 추가 비즈니스에 대한 CIT 인센티브
- 은행 예금 이자수익에 대한 CIT 인센티브
- 인보이스 발행날짜 및 수출매출 인식 날짜
- 규정한도를 초과하는 초과근무시간 및 노동허가서를 아직 못 받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용

#### 3. 간접세

- 제15/2022/ND-CP 시행령 ("제15호 시행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VAT") 감면에 관한 지침

#### 4.1 개인소득세

-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과세
- 전자상거래 기반에서 거래에 대한 PIT 신고 및 납부

#### 4.2 출입국

- Covid-19 이전 수준으로 베트남에 입국 정책 복원

#### 5. 외국인계약자세

- 해외 대출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 ("FCWT")
- 내국 수출입 활동에 대한 FCWT

#### 6. 무역 및 관세

- 무역구제조치 적용 및 무역구제조치 적용대상 물품의 원산지 관련 안내
- RCEP C/O 양식 신고 안내
- 수출 생산을 위해 러시아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리스크

## 조세관리

### 초안 문서

#### 2022년 부가가치세 ("VAT"), 법인소득세 ("CIT"), 개인소득세 ("PIT") 납부기한 연장 제안

재무부는 2022년 VAT, CIT, PIT, 토지,수면 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연장을 위한 시행령 초안을 작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 재무부가 2021년 VAT, CIT, PIT, 토지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제52/2021/ND-CP호 시행령의 제2조에 명시된 전체 대상 항목에 대하여 연장을 제안했다.
- **납부기한이 연장된 조세 항목:**

#### (i) VAT:

- ✓ 2022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022년 1분기의 VAT 납부기한: 6개월 연장
- ✓ 2022년 6월 및 2022년 2분기의 VAT 납부기한: 5개월 연장
- ✓ 2022년 7월의 VAT 납부기한: 4개월 연장
- ✓ 2022년 8월의 VAT 납부기한: 3개월 연장

(ii) 2022년 1분기 및 2분기의 CIT 잠정 납부기한: 03개월 연장

(iii) 개인사업장의 경우 2022년의 VAT 및 PIT 납부기한: 2022년 12월 30일까지 연장

(iv) 2022년 토지.수면임대료의 경우 50%의 지급액에 대해 06개월 연장 (2022년 5월 31일 ~ 2022년 11월 30일) 이시행령 초안은 정부에 제출되었고 서명일로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022년 4월 14일 재무부의 전자포털의 뉴스)

####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SCT) 납부기한 연장 제안

재무부가 2022년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의 SCT 납부기한 연장을 위한 시행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 국내 자동차 생산 및 조립 기업
- **연장 기간:**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SCT의 납부기한이 2022년 11월 20일까지 연장된다.

이 시행령 초안은 단축된 절차로 정부에 제출되었으며, 서명일로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022년 3월 30일 세무총국의 홈페이지의 뉴스)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법인세



### 지침 문서

#### 추가 비즈니스에 대한 CIT 인센티브

회사가 경제구역에 위치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한 CIT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회사가 운영과정에서 공장 임대 활동을 추가할 경우, 공장 임대에 의한 소득은 최초 투자 프로젝트 또는 규정에 따른 확장 프로젝트로 인한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CIT 인센티브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회사가 수정 투자허가서상 비즈니스를 추가하지만 신규 투자사업이 없고 자본을 증가하지 않기때문에 추가 비즈니스에 의한 소득은 CIT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없다.

*(Hai Phong 세무국의 2022년 3월 28일 제764/CTHPH-TTHT 호 OL)*

#### 은행 예금 이자수익에 대한 CIT 인센티브

CIT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회사가 신용기관에 예금계좌를 소유하고 (신용기관이 인센티브 적용구역 내외에 위치하지 상관없음) 신용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을 발생할 경우, 해당 소득은 CIT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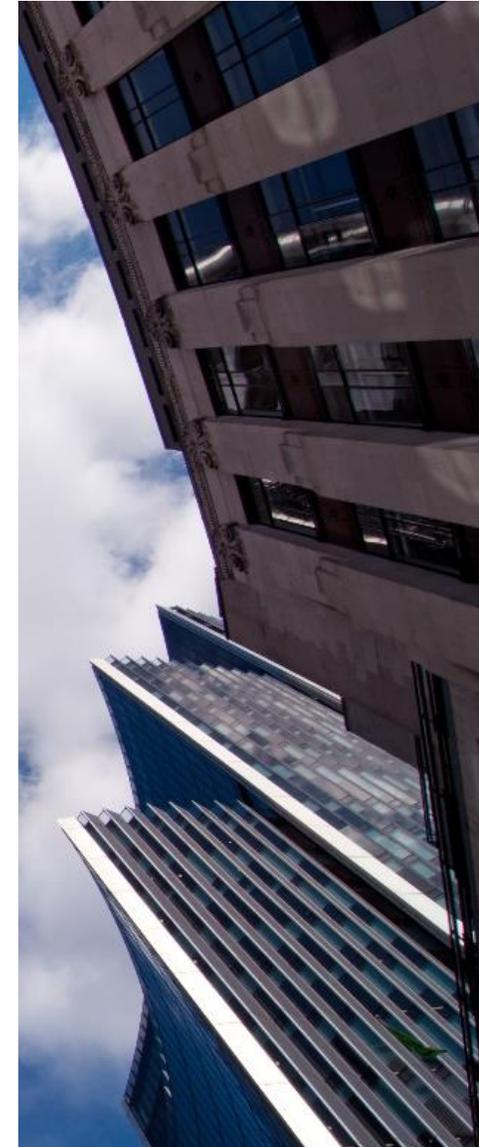
회사는 CIT 인센티브를 적용된 사업활동에 의한 소득과 인센티브를 적용되지 않은 사업활동에 의한 소득을 구분해서 세금을 계산. 신고.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제78/2014/TT-BTC 시행규칙의 제7조, 7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되지 않은 활동의 이자비용과만 상계된다.

*(Hai Phong 세무국의 2022년 3월 21일 제709/CTHPH-TTHT 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법인세



### 지침문서 (cont.)

#### 인보이스 발행날짜 및 수출매출 인식 날짜

해상, 항공, 철도, 내륙 수로, 환적항, 환적구역을 통해 수출되는 재화 및 아웃바운드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되는 재화, 항공 검문소를 통해 운송업체와 함께 운송되는 수출품, CFS 또는 ICD에 입고된 수출품에 대한 인보이스 발행 및 매출 인식 시점은 수출신고서의 세관 신고가 완료되고 화물이 수출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시스템상 모니터링 구역을 통과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이다.

보세창고에 입고된 수출품의 경우 인보이스 발행 및 수익 인식 시점은 수출신고서의 세관 신고가 완료되고 화물의 보세창고 입고가 시스템으로 확인 된 시점이다.

(2022년 4월 08일 Bac Ninh 세무국의 제1118/CTBNI-TTHT 호 OL 및 제1119/CTBNI-TTHT 호 OL)

#### 규정한도를 초과하는 초과근무시간 및 노동허가서를 아직 못 받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용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이 노동법에 의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한 경우 (회사가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노동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충분한 지원자료가 갖추어진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이 CIT상 공제 가능하다.

정부의 제28/NQ-CP호 결의안에 의해 규정된 검역 격리기간 동안 근무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할 때 노동허가서를 아직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비용이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4조의 조건을 충족하면 세무상 공제 가능하다.

(2022년 4월 13일 Binh Duong 세무국의 제5612/CTBDU-TTHT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간접세



### 지침 문서

#### 제15/2022/ND-CP 시행령 ("제15호 시행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VAT") 감면에 관한 지침

##### 1. 국내에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수출가공기업("EPE")의 경우

제82/2018/ND-CP호 시행령, 제30.7조에 따르면 EPE가 국내 기업에 물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허락을 받을 경우, 이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장부를 개설하고 VAT를 등록 및 신고하여야 한다.

EPE는 공제방식으로 VAT를 신고하고 VAT10% 부과되는 상품·용역을 제공할 경우 이런 상품 및 서비스가 제15호 시행령의 부록에 해당되지 않으면 2022년 2월 1일부터 VAT 8%를 적용한다.

(하노이세무국의 2022년 4월 4일  
제12660/CTHN-TTHT 호 OL)

##### 2. 건설 및 설치 활동의 경우

건설 및 설치 활동에 대한 VAT 신고시점이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또는 공사항목, 공사수량에 대한 인수인계확인서의 날짜로 한다.

따라서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수인계된 공사, 공사항목 또는 물량은 제15호 시행령 에 따라 VAT 감면을 받는다 (VAT8% 적용). 상기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인수인계의 경우 VAT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2월 인보이스 발행한 경우 포함).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3월 21일  
제9275/CTHN-TTHT호 OL)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3월 11일  
제8000/CTHN-TTHT 호 OL)

##### 3. VAT 8%로 표시가격 조정

제15호 시행령에 따른 VAT 감면 대상인 서비스의 경우 표시가격이 VAT10%이 포함되면 기업은 VAT미포함 가격을 확정하여 VAT 8%를 적용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3월 21일  
제9264/CTHN-TTHT호 OL)

##### 4. 인보이스 발행 시점

• 용역 수수료를 선수령하고 인보이스를 2022년 2월 1일 이전에 발행하였지만 해당 용역이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된 경우, 2022년 2월 1일 이전의 지급금은 VAT 감면 받을 수 없다.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고 인보이스 발행된 잔여금은 VAT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2022년 1월내에 VAT10%로 제공되었으나 2022년 2월까지야 인보이스 발행된 물품 및 용역의 경우 인보이스 연제 발행으로 간주되며 세금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 2022년 2월 1일 이전에 VAT10%로 발행되었고 2022년 2월 1일 이후 오류로 인해 조정하여야 할 인보이스의 경우 10% 세율이 적용한다. (반품이보이스 포함).
- 특정한 재화 및 용역 (예: 전기)의 경우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보이스 발행될 경우 VAT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재무부의 2022년 3월 23일  
제2688/BTC-TCT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개인소득세



### 지침 문서

####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과세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에게 PIT 과세대상인 미지급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경우 PIT 원천징수는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확인된다:

- 지급일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전인 경우 누진세율에 기초하여 PIT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지급 일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2 백만VND 이상인 경우에는 총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호치민 세무국의 2022년 3월 21일 제2211/CTTPHCM-TTHT호 OL)

#### 전자상거래 기반에서 거래에 대한 PIT 신고 및 납부

개인이 전자상거래 기반에서 거래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기반 소유하는 단체는 민법에 따라 위임받아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 신고.납부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기준은 제40/2021/TT-BTC호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과세소득 및 적용세율이다. 개인사업자 및 가족사업자의 경우 VAT 및 PIT 과세소득은 (과세대상인 경우)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판매 매출 및 기타 수익을 포함한 매출 (세금포함) 이다.

과세소득에 적용된 VAT 및 PIT 세율이 제40/2021/TT-BTC호 시행규칙에 첨부된 부록 I에 따라 사업분야별 적용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3월 21일 제9431/CTHN-TTHT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출입국

### 신규 규정

#### Covid-19 이전 수준으로 베트남에 입국 정책 복원

외교부 영사관은 2022년 3월 15일에 Covid-19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 이전 수준으로 베트남에 입국 정책을 복원한다고 공표하였다. 구체적으로:

- 모든 유형의 비자 및 비자 면제 증명서 발급 절차를 현재 외국인의 입국, 출국, 경유 및 거주에 관한 법률 및 지침 문서에 따라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
-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복원 또는 상호 기반으로 비자 면제.

- 최대한 15일 체류 기간에 13개국의 국민에게 비자 면제 복원하고 2025년 3월 14일까지 유효한다.

(외교부 영사관의 2022년 3월 15일 제/302-CH-LS-PL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외국인계약자세



### 지침 문서

#### 해외 대출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 ("FCWT")

베트남 회사가 대출계약 ("계약")에 따라 독일에 위치한 모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모회사는 베트남에서 받은 대출이자 소득에 대하여 CIT 5%로 FCWT를 납부해야 한다. 베트남 회사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모회사를 대신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 수행 과정에서 모회사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베트남과 독일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제205/2013/TT-BTC호 시행 규칙에 따라) 계약에 따라 받는 대출이자 소득은 베트남에서 CIT를 부과하지 않는다.

- 베트남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모회사를 대신하여 신고 및 납부한 FCWT 금액은 제80/2021/TT-BTC호 시행 규칙 제27조 30조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다.
- 모회사 또는 베트남 회사가 제80/2021/TT-BTC호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면세, 세금 감면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베트남 회사가 상기 언급한 대출 활동에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외국인계약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하이퐁 세무국의 2022년 3월 18일 제679/CTHPH-TTHT호 OL)

#### 내국 수출입 활동에 대한 FCWT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 회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소득을 발생한 경우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FCWT가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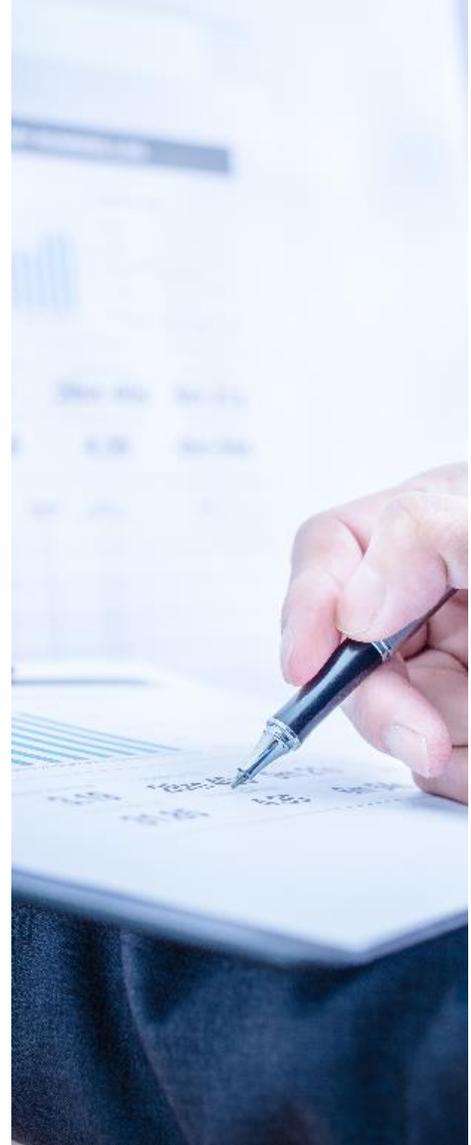
외국인계약자에게 결제하기 전에 베트남 회사가 CIT를 원천징수하고 외국인계약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수출가공기업의 경우 VAT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2년 4월 7일 제5429/CTBDU-TTHT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무역 및 관세

### 신규 규정 및 지침

#### 무역구제조치 적용 및 무역구제조치 적용대상 물품의 원산지 관련 안내

#####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무역구제조치 실행

산업무역부는 2022년 3월 23일에 RCEP에 따른 무역구제조치 실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제07/2022/TT-BCT호 시행 규칙을 공표하였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반덤핑 및 상계 조치 적용: 통보 절차, 덤핑 마진 계산 방법, 정보 공개 및 처리 등
- RCEP에 따른 잠정 무역구제조치 적용: 적용 원칙, 요청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지침, 조사 및 적용 절차 등

본 시행 규칙은 2022년 5월 08일부터 유효하다.

*(산업무역부의 2022년 03월 23일 제07/2022/TT-BCT호 시행규칙)*

##### 2. 무역구제조치가 적용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 자율 증명

무역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무역구제조치가 적용된 모든 상품의 수입 시 다음 협정 중 하나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 자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 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 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UKVFTA)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산업무역부의 2022년 3월 2일 제118/PVTM-P1호 OL)*

##### 3. 내국 수입 물품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내국 수입 물품의 경우, 관세당국은 반덤핑 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검토한다. 관세 신고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관세총국의 2022년 3월 22일 제944/TCHQ-TXNK호 OL)*

##### 4. 반덤핑 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특정 상품의 경우, 기업은 전자 세관 신고서에 원산지 증명서 관련 정보를 신고하고 수입 절차를 수행할 때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2년 2월 25일 제 619/TCHQ-GSQL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무역 및 관세



### 지침 문서

#### RCEP C/O 양식 신고 안내

산업무역부는 RCEP C/O 양식(제05/2022/TT-BCT호 시행규칙에서 발행되고 2022년 4월 4일부터 유효함)의 상세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침을 제공한다.

- RCEP C/O 양식 신고에 대한 상세한 지침
- RCEP를 실행하는 회원국 목록 및 해당 발효일
- 제 05/2022/TT-BCT호 시행규칙의 발효일 이전 베트남에서 RCEP 회원국으로의 선적되는 물품에 대한 RCEP C/O 양식 발행

*(산업무역부의 2022년 3월 31일 제372/XXHH호 OL)*

#### 수출 생산을 위해 러시아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리스크

최근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 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수입, 수출, 심지어 최혜국(MFN) 무역을 금지 및 중단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산업무역부는 베트남 기업이 관련 국가의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러시아산 원자재를 수입하여 러시아에 대한 제재 정책이 적용되는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검토 및 준비를 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기업은 이러한 제재 정책을 피하기 위해 원산지 부정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돕지 않도록 요청한다.

*(산업무역부 무역구제조치청의 2022년 3월 21일 제51/PVTM-P3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Park Eun Sil**  
Tax Manager  
+84 90 220 4587  
eunsipark@deloitte.com

### Hanoi Office

15<sup>th</sup>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 Ho Chi Minh City Office

18<sup>th</sup>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 Deloitte.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